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진입 안내



CONTENTS



● 사회적기업이란?	04
------------	----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05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06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07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12
--------------------	----

● Q&A	13
-------	----

● 충남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17
-------------------	----

참고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	18
------------------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실행
수단



경제활동



생산/영업활동



이윤창출/재투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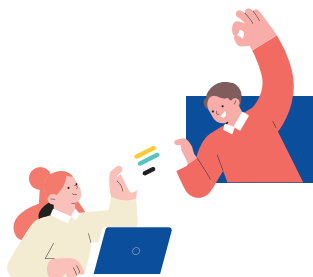
부처 소관 분야별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





지정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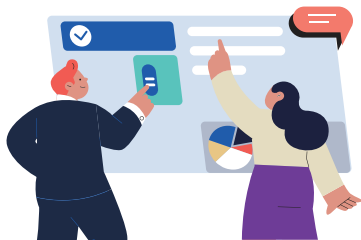
충청남도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시·군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신청)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시·군 및 관련기관



지정심사 및 의결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정

- ① 조직형태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수)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④ -
- ⑤ -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등의 경우)

연중공고

(통합정보시스템)

최대 3년

주관

내용

신청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할 것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등의 경우)

상시접수

(통합정보시스템)

기간 제한 없음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도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시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예비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정관에 규정한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실적 기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취약계층이어야 함.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형 지역의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형 지역의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형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취약계층의 범위

(자세한 내용은 18P 참고 자료 참조)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저소득자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 피해자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 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 기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보호관찰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노숙인,
약물 · 알콜 · 도박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등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교육(P)
- 보육(Q)
- 보건(Q)
- 사회복지(Q)
- 환경(E)
-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R,N)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N)
-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N)
- 간병 및 개인서비스(S)
- 가사지원(T)
- 산림보전 및 관리(A)
- 기타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
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제공형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 고용)
 -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법인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
 - ① 사회적 목적 ②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③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인 '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 또는 관련*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등의 수료증 확인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취소·반납 3년 경과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지정기간과 합산하여 지정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 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 노동관서 조사결과) 되어 부정수금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예비사회적기업은 언제 모집을 하나요?

- 부처형 : 각 부처에서 연중 1회 이상 공모를 진행하며 그 시기는 부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형 : 반기별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시기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가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가능하나 대표자가 별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거래관계, 근로자 혼재여부, 소재지 등을 확인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불가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조직형태가 법인격이어야 합니다.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단지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을 많이 한다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기업 정보 변경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① 기관명
- ② 소재지
- ③ 대표자의 성명
- ④ 지정유형 및 조직형태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자치단체장은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 중 신청사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경신청 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되되, 1회당 연장기한은 20일 이내로 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기간 중 대표가 바뀌었고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면, 미지정 요건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 변경 시 근로계약을 재작성해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중에 근로기준법 준수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정이 가능한가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하여 지정받을 수 없으며, 타 부처 간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정도 불가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물품 기부도 포함이 되나요?

사회서비스 제공이란, 단순히 물품 기부가 아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혜자인 취약계층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때, 꼭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야 하나요?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생략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은 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며, 육성전문위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등)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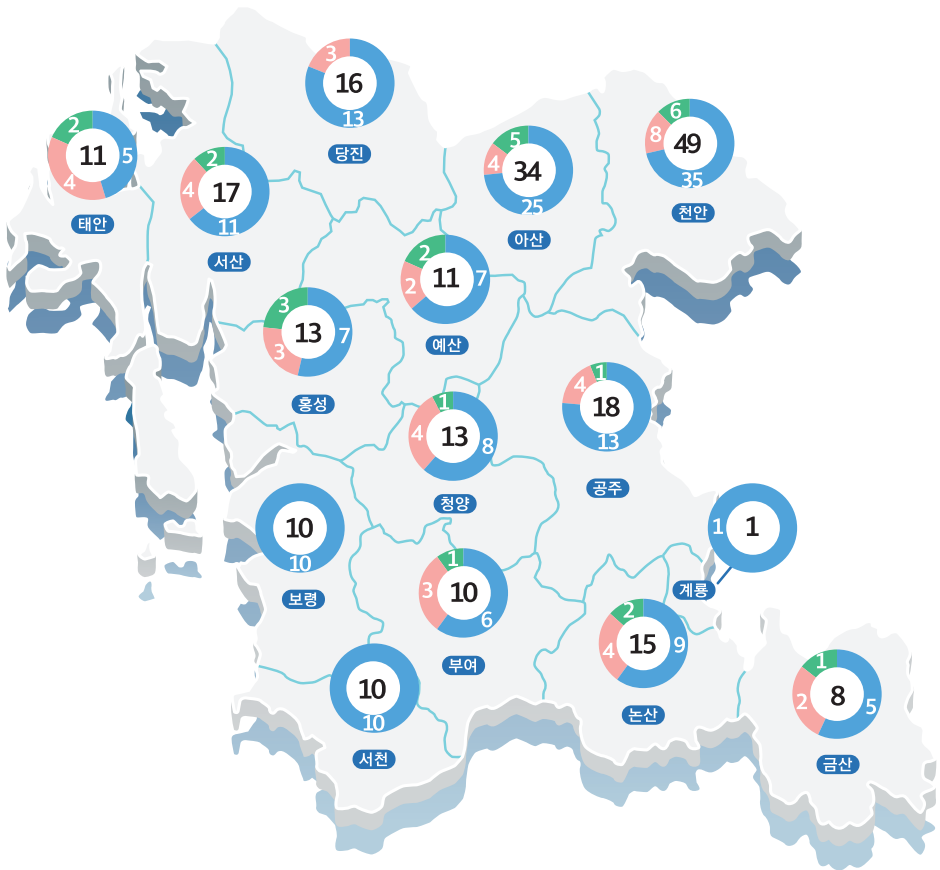
충남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소계
236

인증
165

예비(지역형)
45

예비(부처형)
26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 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 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 '25.10.17)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볼.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4.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가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제6호

북한이탈 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 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2호
기타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 알코올, 도박중독자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천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확인)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9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확인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41-456-8134**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

✉ cb@cnse.kr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551-20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서비스지원본부 세종대전충청센터 ☎ **044-903-0795**

사회적기업 인증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551-20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서비스지원본부 세종대전충청센터 ☎ **044-903-0795**